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일, 정순기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및 폐사선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4)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5) 정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청과 구민이 함께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정비추진단 : 공중케이블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구민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15명 이내
- 임기 : 1년

마) 정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및 안 제7조)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

3) 검토 의견

- 공중케이블의 지속적 난립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저층주거지의 관리 미흡으로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설치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